

의안번호	2211013
의 퇴 인	엄태영 의원
회 답 일	2025. 6. 25.
추 계 번 호	25E335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관련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29년말로 연장할 경우, 재정수입 감소는 2026~2029년 4년간 총 206억원(연평균 52억원)으로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 (안 제87조의2)	-53	-52	-51	-50	-206	-52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87조의2 (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)	○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- (현행) 농어민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해 소득세·증여세·상속세 비과세 - (개정안) 농어민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해 소득세·증여세·상속세 비과세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87조의2 (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
- 2024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금리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세수효과 추계
 -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 저축의 2024년 규모가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후 금리 전망을 반영하여 관련 세수효과 추계
 - 현행 일몰기한은 2025년까지이므로 일몰기한 4년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설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1) 조세지출 실적

-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관련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 비과세에 대한 최근 조세지출실적은 202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 37억원, 2023년 43억원 등으로 최근 증가 추세(2021~2024년 연평균 24.2% ↑)
-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일정규모 이하의 농·임·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가 연간 240만원 한도(만기 3년 또는 5년) 가입 시 약정이율과 저축장려금 지급

[표 2]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	2020	2021	2022	2023	2024 ¹⁾	연평균 ²⁾
조세감면액	40	35	37	43	67	46
(증감률)	(△24.5)	(△12.5)	(5.7)	(16.2)	(55.8)	(24.2)

주: 1)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전망치

2) 2021~2024년 평균

자료: 기획재정부, 각 연도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2) 추계 방법

-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2024년 규모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향후 금리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여 조세지출액 전망
 - 동 저축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2024년 저축 규모가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후 금리 전망을 반영하여 관련 세수효과 추계
 - 현재 향후 수신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국고채 3년물 이자율의 전년대비 증감률에 따라 2024년 이후 조세지출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가정하여 세수효과 추계
 - 국고채 3년물의 이자율은 「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~2028」(2024.10.)의 전망치 활용

[표 3] 연간 시장금리 최근 추이 및 향후 전망

(단위: %)

구 분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국고채 3년물	3.6	3.1	2.8	2.8	2.7	2.6	2.5
(증감률)	-	(△124%)	(△93%)	(△21%)	(△18%)	(△33%)	(△42%)

자료: 2023년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, 2024년부터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

3) 추계 결과

-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관련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6년 53억원 등 2026~2029년 4년간 총 206억원(연평균 5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4]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 시 세수효과: 2026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(안 제87조의2)	-53	-52	-51	-50	-206	-52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성은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성은	02-6788-4668	ixsepark@assembly.go.kr